

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
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행정기구 명칭 변경(경제부지사→정무부지사)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변경함.
 -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 -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(안 제2조)
 -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(안 제3조)
 -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4조)
 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5조)
 -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6조)
 -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(안 제7조)

-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안 제8조)
-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9조)
-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0조)
-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안 제11조)
- 충청북도조례 제5128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 제12조)
-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 제13조)
-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(안 제14조)
-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5조)
-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6조)
-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7조)
-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8조)
-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19조)
-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0조)
-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 제21조)
-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(안 제22조)
-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(안 제23조)
-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4조)
-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(안 제25조)
-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(안 제26조)
-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(안 제27조)
-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28조)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 제2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(24. 8. 9. 개정, 24. 9. 1. 시행)의 개정을 통해 기존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정무부지사”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
 -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한 관련 조례를 변경된 기구의 명칭에 맞게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근거인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「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29개 조례에 대하여 기구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대상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바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본 조례안은 기구의 명칭 변경 사항을 개정 대상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, 입법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청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. 끝.